

# 교육 일지

주무관	의정팀장	구의회사무국장
이은정	홍남기	전결 04/05 이동호

교육일시	2015. 4.2.(목) 17 : 50 ~ 18: 20
교육장소	의회사무국 사무실
교육대상	29명 (참석 : 29 명, 불참 : 0명)
불참내용	
강 사	의정팀장
제 목	직원 청렴 교육 일지

## 2015년 청렴 교육 운영 안내

- 운영기간 : 2015. 1. 1. ~ 2015. 12. 31.
- 청렴교육 의무이수 시간 : 5급이상 : 15시간 이상 / 6급이하 : 10시간 이상
- 대상교육 : 외부기관(인재개발원 등) 및 강남구 자체 청렴교육
- 청렴교육의 범위 : 행동강령, 반부패 청렴과정, 청렴교육, 공직가치, 공직기강, 권익구제, 공직자의 사회공헌활동 등 (\*친절교육 등은 제외)
- 교육실적 제출 : 『공직자 자기관리시스템』에 개인별·부서별 실적입력

## 청렴 교육 (사례 소개)

### I 알선 · 청탁 금지



기관장이 인사 차 찾아온 고향 후배와 환담 중 청사시설 보수 업무 담당국장을 불러 고향후배에게 보수계획을 브리핑하도록 한 후 “후배의 민생해결을 위해 일을 맡겨보라”고 하였음. 현재 동 사업의 시행사 선정 작업이 진행 중이어서 기관장의 고향 후배가 동 사업을 맡게 될지 여부는 미정인데, 문제가 될지?



공무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알선 · 청탁 등을 해서는 안 됩니다. 알선 · 청탁한 사실이 있다면 내용의 실현 여부와 관계없이 행동강령에 위반됩니다.

### I 업무협조에 대한 감사표시로 주는 상금



해외업무를 담당하는 A공기업 직원이 해외에서의 신속한 업무협조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B공기업으로부터 감사패와 함께 상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?



직무관련단체로부터 금전을 받는 것은 공직자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 등(금전, 부동산, 선물 또는 향응) 수수를 금지하는 행동강령에 위반됩니다. 다만 직무관련자로부터 간소한 감사패는 받을 수 있습니다.

주: 공직자 행동강령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한 것임

- 별첨 1 청렴교육일정(집합) 안내 1부.  
2. 청렴교육일정(온라인) 안내 1부. 끝.

비 고	
-----	--